

전기통신 금융사기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에서 지원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유형



보이스피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금융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 수법

메신저피싱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스미싱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MS를 통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정보 탈취

※ 전기통신을 이용했더라도 법상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함에 따라 투자(코인)·사기·물품사기·로맨스스캠·몸캠피싱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은 모두 제외

신청 방법

사무국 메일(shinhan-voice@gnk.or.kr) 혹은 팩스(02-6733-1067)를 통한 사업 신청 서류 제출

※ 대면접수 불가

사업 절차



차수별(월별) 선착순 신청 접수

※ 개인 및 기관 신청 가능



심사 및 대상 선정

익월 15일 이내



선정 결과 발표

익월 20일 이내 사업 홈페이지 안내 및 문자 발송 (주말인 경우 차주 월요일 발표)



결과 발표 후 과정 안내

각 사업 별 개별 안내 예정

※ 추가 사항은 사무국(1811-0041)으로 문의



보이스피싱제로
사업 홈페이지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

(월~목) 10:00~17:00 / (금) 10:00~12:00

T. 1811-0041 F. 02-6733-1067

H. 사무국 홈페이지

voicephisingzero.co.kr

온라인 예방 교육 홈페이지

voicephisingzero-onlineclass.com

×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안내

+

